

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4명 단일화 및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 - 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[붙임]
 - 나. 적용지역 : 전라남도 전 지역
 - 다. 처분기간 : '21. 7. 19.(월) 0시 ~ 8. 1.(일) 24시까지
 - * 처분 효력발생일 : '21. 7. 19.(월) 0시~
 - 라. 처분내용 :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되, 사적모임 4명 제한 및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
 -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
 - 민주노총 서울집회(7월 3일) 참석자 진단검사
 - *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 -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
 -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
 - * 유흥시설 : 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
 -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·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
 - 마. 처분사유 :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4명 제한 등
 - 바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 - 사. 별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 및 제4항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(300만 원 이하)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(10만 원 이하)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7월 19일

전라남도지사



《완화 불가능한 조치》

- ▶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
- ▶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

구분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① 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<p>▶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*</p> <p>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</p> <p>* 예외 : ①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내 미포함 ③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④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⑤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, (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)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</p> <p>(참고) 예방접종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</p>
기타 모임·행사	<p>▶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</p> <p>▶ (집회) 100명 이상 금지</p> <p>▶ (행사) 100명 이상 금지</p>
② 1그룹 시설	
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<p>▶ 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</p> <p>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</p> <p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p> <p>* 클럽, 나이트는 10㎡당 1명</p> <p>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</p> <p>▶ (감성주점, 헌팅포차, 단란주점) 춤추기 금지</p>
클리텍무도장	<p>▶ 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</p> <p>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(수기명부 불가)</p> <p>▶ 시설 면적 10㎡당 1명 인원 제한</p> <p>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</p> <p>▶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</p>
홀덤편·홀덤편게임장	<p>▶ 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</p> <p>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</p> <p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</p> <p>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</p> <p>▶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, 미설치 시 사람(플레이어)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</p>

구분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③ 2그룹 시설	
식당·카페 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0시~오전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²이상) ▶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노래(코인)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0시~오전 05시까지 운영 제한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, 30분 간 환기)
목욕장업 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시설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▶ 공용물품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▶ 수면실 이용금지
실내체육시설 (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* GX류 운동(그룹댄스운동,스피닝,에어로빅 등), 체육도장(태권도, 유도 등)은 6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운영시간 제한없음 ▶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④ 3그룹 시설	
학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²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
영화관·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출입자 명부 작성(예매자에 한해 예외) ▶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,000명 이내로 제한

구분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웨딩홀별 4㎡당 1명 + 100인 미만 ▶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*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빈소별 4㎡당 1명 + 100인 미만 ▶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이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좌석,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
실내체육시설 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
유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▶ 이용자 간 2m(최소1m)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
오락실·멀티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㎡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판촉용 시음·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건본품 제공 금지 ▶ 휴게공간 이용금지 ▶ 집객행사 금지 ▶ 출입자 발열체크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 ▶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▶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**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

구분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⑤ 기타 시설	
스포츠경기(관람)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실내) 경기장 수용인원의 30% ▶ (실외) 경기장 수용인원의 50% ▶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 ▶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,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
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용인원의 30%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불가)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의 50%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외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가능한 한 개인물품 사용 권고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직계가족은 예외) * 객실 내 '정원'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▶ 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, 홀대여 제외)
파티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파티 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
도서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용인원의 50%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키즈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
돌잔치전문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+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)
전시회·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 *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▶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·시식공간 이용 ▶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

구분		도내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+방역수칙 조정)
마사지업소, 안마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
국제회의·학술행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▶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▶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, 사전등록제 운영
종교시설 방역수칙		
종교시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체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 ▶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▶ 종교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▶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 안내 ▶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
사업장 방역수칙		
사업장		▶ 300인 이상 사업장(제조업 제외) :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10%(권고)
물류센터		▶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안내
콜센터		▶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